

대여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효율적 대응전략 연구

—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중심으로 —

김 호 철

(경찰청수사과 경위)

1. 서-카오스이론에서 본 성폭력과 가정폭력

한국사회가 고도 산업사회로 진행됨에 따라 사회의 규범력이 약화되는 사회일탈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일탈현상의 대표적인 현상은 범죄(crime)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범죄중에서 최근 급격히 부상하는 문제가 바로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인류학적으로 분석하면 신체적으로 나약하고 심리적으로 민감한 여성들에 대하여 신체적으로 강인하고 심리적으로 공격적인 남성이 저지르는 일종의 공격행위이다. 이것은 원시시대의 모계중심사회에서 경제구조가 산업화되면서 부계중심사회로 진행됨에 따라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즉 앞으로도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계속 사회문제화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유지될 수 없으며 사회응집력의 해체로 인한 파급효과(spill

over effect)가 발생할 것이다. 즉 사회의 구성단위는 개인에서 시작하여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런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가장 중요한 사회구성단위인 가정(family)을 위협하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가정이 무너지면 바로 거기에서 자라나는 청소년의 가치관의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청소년의 가치관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모방효과를 통하여 이루어 지고 있는데,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전승되는 가치관은 바로 청소년문제로 직결되고 이 청소년 문제는 최근 문제시 되는 학교폭력의 문제, 약물남용의 문제, 범죄의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다. 94년 청소년 범죄자의 수가 경찰검거 총피의자의 7.4%를 차지하는 108,681명에서 95년 경찰검거 총피의자의 8.4%를 차지하는 123,272명으로 증가하는 것은 분명 가정과의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 즉 청소년 피의자는 94년에 비하여 13%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한 분야의 변화가 다른 분야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론이 있다. 그것이 바로 카오스(chaos)이론인 것이다. 제임스 글리크가 지은 카오스(chaos)이론이란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온다. 미국의 한 천문학자인 로렌쯔는 기상학자였다. 그는 대기환경의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미래의 일기를 예측하기 위하여 고유의 방정식(변수와 변수의 관계를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인과관계로 나타내는 식.예: $y=x^2$)으로 나타내고 로열맥비라는 컴퓨터에 입력하였다. 로렌쯔는 수치를 입력하다가 무심코 독립변수의 수치를 생략된 수치로 했더니 종속변수의 수치가 그래프로 전연 다르게 그려지는 것을 발견했다. 예를 들면, 독립변수에 0.123456이라는 수치를 입력하다가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는 사사 오입하여 0.123으로 입력했더니 나중에 그래프의 모습이 전혀 달라지더라는 것이었다. 로렌쯔는 처음에 컴퓨터가 잘못된 것인가 의심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초기값의 변화가 나중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옴을 발견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나비효과(butterfly effect)'이다. 이것은 중국에서 나비가 한번 살랑거리면 미국의 뉴욕에서는 그 이튿날 폭풍이 몰아친다는 이론이다. 즉 이것은 아주 작은 초기값의 변화가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무리 지식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그것을 예상해도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결론을 상징하고 있다.

이것을 '초기조건에의 민감한 의존성'(sensitive dependence on initial conditions)라고 한다. 따라서 카오스이론에서 처럼 성폭력과 가정폭력이라는 초기조건의 변화는 바로 청소년범죄, 학교폭력, 약물범죄등과 서로 맞물려서 진행되는 문제라고 규정할 수 있다. 중국에서 나비가 한 마리 날면 이튿날 뉴욕에서 폭풍우가 몰아치듯 사회의 일탈현상이 도미노 현상처럼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초기조건의 변화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이하에서는 그런 논리로 대여성범죄의 증가원인에 관한 접근을 다각도로 하고나서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이러한 건강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대여성범죄의 원인에 관한 접근

대여성범죄는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인가. 이것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인간의 내면에서 움직이는 심리적 접근, 사회적 접근, 법적인 접근으로 간단히 고찰할 수 있다.

가. 심리적 접근방법

심리학적으로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사이코증후군의 외적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보통 사이코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이상심리가 외적으로 표출되어 반사회적인 행

동으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이코 증후군에서 가정 폭력과 성폭력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성폭력은 잠재의식속에 내재된 성적 호기심, 남성의 발산욕구 등의 외적표출이 결혼이라는 제도권밖에서 이루어 지는 사회일탈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가정폭력은 자기의 아내를 폭행하고, 자기의 자녀를 폭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대부분 가해자인 남성이 결혼생활을 통하여 얻으려 했던 보상심리가 보상받지 못지 못함으로써 보복심리로 변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한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하여 얻으려고 했던 사랑이나 순결이나 재산 등의 세속적 가치들이 결혼생활을 통하여 충족되지 못할 때 이런 가학적인 폭력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에리히 프롬이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강조한 새디즘의 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결혼생활을 통하여 얻으려고 했던 가치들이 실현불가능 함에따라 그 원인을 제공한 여자가 가증스러워서 여자를 폭행하고 그 여자가 생산한 제2세를 폭행하는 것이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나타난다. 여자가 남자를 증오하여 제2세를 살해하거나 학대하는 경우다. 이런 것은 모두 순수한 사랑보다는 조건있는 결혼이란 잘못된 출발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성폭력은 남성이 여성을 강간하고, 강제추행하는 것은 물론 언어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야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이 결혼에 의해서 성립한 가정이라는 사회적 제도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데 대하여

이런 성폭력은 주로 결혼에 의해서 매개되지 않는 비제도적 성적폭력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부부간의 강간이나 강제추행이라는 현상도 나타나지만 현행 판례는 부부간의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부부간의 성폭력은 논외로 한다. 이러한 성폭력도 사이코증후군의 외적표출이라는 데 가정폭력과 공통점이 있다. 인간의 성에 대한 해석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이론을 빌자면 잠재의식속에 존재하는 성에 대한 갈망과 두려움이 관음증, 동성연애, 외디푸스 콤플렉스 등의 변태로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성폭력은 잠재의식속에 내재된 성적 호기심, 남성의 발산욕구 등의 외적표출이 결혼이라는 제도권밖에서 이루어 지는 사회일탈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사회적 접근방법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적하였듯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다. 이것은 인간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불교에서는 이런 것을 연기법(緣起法)이라고 한다. 즉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의 사고방식으로 개인과 개인은 서로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삶

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성’을 중심으로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은 가정내에서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자식 등의 관계가 정상화되지 못하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정상적인 가정의 구조에서 남편은 경제생활을 통하여 가정을 유지해야 할 책무가 있고, 아내는 남편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가정생활을 이끌어야 하는 관계이다.

이것은 가정이라는 조그만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이상적인 모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관계의 균형이 유지되지 않고 불균형이 초래될 때 남편과 아내는 갈등(葛藤)을 일으키게 된다. 예를 들면 남편의 경제력이 아내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든지 아내의 가정살림이 남편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게 될 때 발생하는 갈등이 결국 폭력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제2세의 교육을 위한 어머니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문제를 일으킬 때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신뢰를 깨뜨리는 촉매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가정폭력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둘째,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접근은 형사정책적 이론을 원용함이 타당할 것 같다. 성폭력은 결혼이외의 비제도적 성행위라고 할 때, 이것은 전혀 무관계한 사람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의 성폭력상담소의 분석에 따르면 가족이나 친지 등의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잘 아는 관계를 이용하여 접근의 용이성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방어기제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자신을 성폭행하지 않는다는 기대를 형성하게 되는 데 가해자는 이런 기대를 역이용하여 접근하는 것이다. 잘알지 못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는 범죄학에서 거론하는 ‘피해자도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여성의 과도한 노출이나 뇌쇄적인 동작들이 남성의 말초신경을 자극하여 결국 성폭력을 불러 일으킨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요즘의 성폭력은 이런 피해자도발이란 원인으로 단정하기에는 너무나 파렴치하고 용이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피해자가 도발을 하였다손 치더라도 궁극의 도덕적 비난과 법적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는 것이다.

다. 법적인 접근방법

다음은 법적인 접근방법이다. 이것은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원인이 법적인 면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를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법적인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법을 강화해서라도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응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논의되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범지상주의로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은 마치 무너지는 댐을 팔뚝 하나로 막

으려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다. 살인이나 강도나 절도등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은 최후에 최소한의 힘으로 가정에 개입하는 것이 합리

가정폭력이라는 특성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인 데도 일부 여성단체들이 가정폭력방지법 등의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적일 것이다. 그것은 가정과 성(性)이라는 인간고유의 생활영역내에 대한 개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첫째,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접근으로 가정폭력은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이므로 법이 어디까지 관여하느냐의 한계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것은 예방의 측면과 검거의 두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예방의 측면에서 경찰은 '위험방지(Aufgefahr)'를 위하여 가정내에 개입할 수 있는냐의 문제가 대두된다. 행정법상 경찰공공의 원칙에 의하여 경찰은 사주소불가침(私住所不可侵)의 원칙을 준수하는 한 경찰이 가정에 개입하는 것은 경찰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의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에서 '경찰관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 타인의 토지, 건물또는 선차내에 출입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찰이 가정문제에 언제 개입하여야 하느냐의 판단문제가 중요한 것이다. 즉 무엇이 위험이 절박한 때이냐의 문제이다. 이것이 경찰관의 판단여지(判斷餘地)로 사법부

의 심사가 제한된다면 경찰개입의 범위가 넓어지겠지만, 만일 재량문제(裁量問題)로 고려될 경우에는 재량의 일탈, 유월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그만큼 개입범위가 협소할 것이다.

따라서 일부 여성단체들이 경찰이 순찰을 소홀히 하고 가정문제에 소홀히 한다는 것은 행정법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무시한 위법을 강요하는 것일 수 밖에 없다. 헌법에는 사생활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범인의 검거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에는 주거의 수색에 있어서 영장을 요청하기 때문에 참으로 이문제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헌행법상 가정내에서 폭행이 발생할 경우 형법의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 단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여성이 수사기관에 처벌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사실 현실적으로 폭행을 당한 여성이 신고를 하여 경찰이 가해자를 검거하면 여성은 보복이나 연민의 감정으로 대부분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

이와같은 범망의 한계 때문에 가정이 준치외법권화 됨으로써 가정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성폭력에 대한 문제이다.

성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형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 한다)이 있다. 이 법의 특성은 친고죄가 많다는 것이다. 친고죄는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범죄이다. 친고죄(親告罪)로 한 이유는 성폭력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수치심을 자극하기 보다는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강간치상과 같이 피해자의 피해가 큰 것은 비친고죄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인 한계가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친고죄가 됨으로써 가해자는 성폭력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경제적 배상을 받고,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하는 행태가 많이 발생한다. 이것은 가해자가 파렴치한 범죄를 자행하고도 자신의 비도덕적 비행을 금전적인 배상으로 만회하려는 행태인 것이다. 이러한 친고죄가 바로 성폭력을 부추키는 요인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에도 피해자의 명예심보호라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참으로 성폭력을 처벌하여 특수예방과 일반예방을 거양하는 효과와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두 가치의 갈등은 결코 일시적 흥분에 의하여 논의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라. 결론 - 종합원인의 분석

위와같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은 심리적인 원인, 사회적인 원인, 법적인 원인의 종합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된 원인은 인간의 심성의 반사회성을 노정하는 사이코증후군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이코 증후군이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나타나고 허술한 법망은 그것을 예방하고 검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진단한다.

3. 대여성범죄의 대응전략의 모색

위에서 가정폭력 및 성폭력범죄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성폭력범죄와 가정폭력이 하나의 사회문제(social problem)이라면 그에 대한 대응은 문제해결(problem solving)의 접근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각각의 문제원인에 대한 하나의 전략(strategy)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이 종합적이므로 그에 대한 대안도 종합적인 전략(policy mix)이 되어야 함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가. 성폭력에 대한 대응 전략

성폭력을 방지할 솔로몬의 지혜는 무엇인가?

심리적으로 성폭력은 습관성 질환이다. 이것은 한 번 고치기 힘든 범죄라는 것이다. 95년 한 해동안 강간피의자 4,821명 중 2,632인 54.9%가 전과자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교도행정에 있어서 중대한 시사점으로 전과자의 재범방지 교육이 소홀하거나 효과가 없다

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범인에 대한 재소자 교육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폭력 범직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징역형을 선고할 것이 아니라 명예형인 자격정지나 자격상실제도를 도입하고 나아가 명단공표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존재근거를 상실토록 해야

첫째, 심리학적 혐오치료를 하는 것이다. 이것의 힌트는 불교다.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이 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 낸다는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심리적 측면에서 볼 때 사회의 건강을 유지하여 사회구성원의 마음이 청정하다면 그만큼 사회의 병인 죄악도 감소할 것이다. 불교에서는 탐함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삼독(三毒)이라고 하는데 이런 삼독으로 인하여 온갖 번뇌와 죄악을 일으킨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삼독의 마음으로 짓는 업(業)을 신구의(身口意) 삼업이라고 한다. 이러한 업에 대하여 업보를 받게 받는다는 것이 불교의 인과응보사상이다. 이것은 특정종교의 가르침이지만 우리가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다루는 데 참신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서양의 과학자들이 불교를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가르침이요 석가모니는 사회의 의사라고까지 격찬하였으니 프로이트의 심리학은 이것에 비하면 초등학생의 구구단에 불과할 뿐이다.

사실 프로이트는 잠재의식을 억제할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부정관법(不淨觀法)이라는 수행법이 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혐오치료의 방법이다. 석가모니는 제자들이 음행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시로 죽은 여자의 시체를 거리에 방치하고 여자의 성기에서 벌레가 기어 다니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여자를 허망하고 더럽게 보려는 수행법이였다. 석가모니는 설산에서 수도시 여자가 유혹을 하면 ‘이 똥오줌 가죽아. 나는 너희 유혹에 넘어가지 않나니 어서 물러가거라’하고 가르쳤다고 한다.

이것을 성폭력범인에게 현대적으로 응용하여 혐오치료를 하는 것은 한 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즉 교도소 내에서 갱생교육의 차원에서 다양한 혐오치료를 통하여 성폭력범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현대적인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교도행정에 있어서 아무리 가혹한 처벌을 가한다고 할 지라도 심리적인 변동이 없는 한 사회에 다시 방출되었을 때 다시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형법의 특별예방이론적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명단공표를 통한 수치심 자극이다. 함무라비 법전에 ‘눈에는 눈, 귀에는 귀’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피해법익을 상쇄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그렇다면 성폭력으로 가장 침해당한 피해

법익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성의 성적수치심이다. 따라서 가해자도 가장 수치심을 느끼는 방법으로 보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남성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심은 무엇인가. 남성은 사회생활을 하는 존재이다. 그만큼 남성에게 있어서 사회적 신용은 중요한 것이다. 남자에게 있어서 사회적 신용을 잃는다는 것은 여자에게 있어서 강간을 당하는 수치심과 같은 것이다.

현행형법은 정조에 관한 죄의 형벌에 있어서 징역과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전혀 심리적 재발방지에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징역을 살릴 것이 아니라 명예형인 자격정지나 자격상실제도를 도입하고, 나아가서 ‘명단공표’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존재근거를 상실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명단공표는 고액국세체 납자의 명단공표제도가 있다. 이것은 행정적인 행정벌이다. 따라서 성폭력특별법 등을 제정할 때, 성폭력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간신문에 명단과 주소를 게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거부감을 유발하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한 번 실수로 저지르는 범죄인을 사회적으로 혹독하게 대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성폭력만큼은 피해자가 평생을 잊지 못하는 가장 괴롭히는 범죄이다. 최근의 김부남씨 사건을 보아도 수십년전 당한 악몽을 잊지 못하고 가해자를 살해하는 것을 보면 여성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런 충격(im-

pact)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됨으로써 자녀의 가치관이 혼돈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카오스이론의 현상처럼 아주 조그만 변화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여성단체들이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하여 친고죄를 폐지하자고 하나 이런 방법보다는 명예형을 도입하고 명단공표제도를 검토하여 사회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범인의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예방효과’와 일반인이 성폭력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일반예방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전략

가정폭력을 방지할 솔로몬의 지혜는 무엇인가?

이것은 사회적 관계개선의 접근으로 시도되어야 할 전략이다. 이것은 주로 가정폭력에 대한 접근방법이다. 위에서 분석하였듯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개선이라는 방법으로 평소 대화를 통하여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대화는 상호의 이해를 도모하는 지름길이다. 미국의 언어학자 데보라 테넨이 쓴 책 ‘내말은 그게 아니야’를 보면 미국의 가정에서 대부분의 이혼이 바로 이러한 부부간의 의사소통(communication)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언어의 한계성이다. 언어는 전달자와 피전달자, 전달매체, 전달상황 등의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하

여 오도될 위험이 많다. 즉 통신학에서는 이것을 잡음(noisy)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부부간의 잡음이 갈등으로 확대되고 또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간에 평화가 유지되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찰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지역사회의 여론을 통하여 억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구체적 대응방안으로 우선 주거지역의 부녀회라든가 반상회 등을 통하여 사회적 여론을 악화시킴으로써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기 위해서는 이런 대화를 통한 의사전달의 방법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사회가 거란의 1차침입을 당해서 세치 혀로 거란군을 물리치고 강동6주를 획득했다고 했는데 하물며 한 이불속에서 사는 부부는 더욱 쉬울 것이다.

또 하나 현대의 가정폭력이 방치되는 이유는 사회의 연대성과 개방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아파트로 상징되는 밀폐가옥의 구조가 사회심리적으로 가정폭력을 조장할 수 있다. 즉 이웃에서 사람을 구타하여도 이웃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므로 가해자인 남성은 도덕적 방어기제를 상실하고 마음놓고 폭행을 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찰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지역사회의 여론을 통하여 억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구체적 대응방안으로 우선 주거지역의 부녀회라든가 반상회 등을 통하여 사회적 여론을 악화시킴으로써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의 옛 속담에 ‘병은 널리 소

문내야 고쳐진다’는 얘기가 있다. 이러한 선조들의 지혜는 사회심리학적으로 병의 고통을 공유하는 가운데 합리적인 치료법을 토론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 논리라면 우리의 가정폭력이 더 이상 한 가정내의 문제로 규정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바로 사회의 문제다. 따라서 가정의 문제에 대한 개방성과 연대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자칫 타부(taboo)시하기쉬운 가정내 문제에 대하여 지역사회와 유대를 통하여 함께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4. 대여성범죄에 대한 효율적 경찰대응방안 모색

위에서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문제를 주로 심리적, 사회적, 법적인 면에서 고려하여 보았다. 앞에서 강조하였듯이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피해자의 심리적 수치심이나 명예심의 보호를 특별히 보호하여야하기에 경찰이나 검찰의 사법기관이 신중하게 개입하는 견지를 보였다. 대신 사회생활의 규범체계를 통제메카니즘이나 교도행정의 교육개선 등의 방법으

로 해결하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파렴치 범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제도적인 경찰이 침투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입장에서 경찰의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하기로 한다

가. 경찰대응의 문제점

1) 대여성범죄 수사과정상의 피해자배려 소홀

－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일부 수사관들이 성폭력피해자의 수치심을 자극하여 성폭력피해자들이 제2의 정신적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자료: 성폭력과 피해자, 월간 수사연구(95. 10월호))

－ 가정법률상담소의 상담사례 분석 결과, 경찰대응의 가장 큰문제점은 가정폭력은 제1차적으로 가정내의 문제이지만 이를 경찰관서에 신고할 경우 경찰의 소극적 대응 자세로 가정폭력이 반복되는 현상을 보인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 자료 : 가정법률상담소 상담사례분석, 부소장 법학박사 양정자)

2) 대여성범죄에 대한 여자수사요원 부족

－ 전체 여자 경찰 총1,217명중 수사관련 근무자는 199명(조사55, 수사63, 형사81명)으로 전체 여경의 약 16%에 불과하고, 이는 전체수사요원 14,357명중 1.4%에 불과하여 여자 수사요원의 부족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각 기능별 여경점유율〉

기능	전체경찰관 수	여경인원(비율)
경무	4,986	310(6.2%)
방범	3,754	121(3.2%)
수사	14,357	199(1.4%)
교통	4,445	394(8.9%)
기타	62,539	192(3.0%)

(* 자료 : 한국여자경찰관의 직무범위에 관한 연구,연대행정대학원)

3) 여자경찰에 대한 수사 교육시스템의 부족

－ 현재 여경에 대한 수사교육은 순경신임과정의 강의식 교육 86시간이 주를 이루며,

실습교육은 수사연수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여경수용 시설부족, 여경지원자 부족등으로 여경 수사교육은 열악한 상태이다.

〈신임여경에 대한 수사관련 교육〉 중앙경찰학교

교육과정	교수요목	시간			비고
		계	강의	실습	
신임순경과정	수사실무	8	8	없음	
	수사서류	26	26	없음	
	형사실무	40	40	없음	
	감식	12	12	없음	

〈수사직무과정 수사실무반 교육〉 수사연수소

교육과정	교수요목	시간			비고
		계	강의	실습	
수사직무과정	소계	152	92	54	
	소양과목	13	13		
	수사실무	129	79	50	

나. 경찰의 효율적 대응시스템 도입전략

현재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시스템이 부족하다. 시스템(System)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하위 구성단위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구조와 기능을 말한다. 즉 여성을 상대로 일어나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관련 첩보수집기능, 여성관련 상담기능, 여성관련 범죄의 검거기능, 여성관련 피해자 보호기능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경찰에는 이러한 체계적 시스템이 부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응전략에 있어서는 유기적인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1) 여성관련 범죄의 정보수집기능 활성화
 이것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에 경찰의 정보망에 얼마나 투입(input)이 되느냐의 문제이다. 현재 그런 채널로는 피해자의 신고, 고소, 제3자의 고발,투서등이 있고 여성상담실의 상담전화가 있다. 특히 여성관련 범죄의 정보수집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자수사요원의 정보수집기능과 여성상담실의 정보수집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성상담실은 91. 2월 전국 지방청 13개를 설치할 시작으로 현재 144개 경찰서까지 확대되어 설치되고 최근에는 235개의 전경찰서에 설치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여성상담실의 기능이 중요시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경의 부

족, 상담공간의 부족, 상담수요의 부족등으로 활성화시키는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의 주요 원인은 민간인 상담시설이 급격히 증가한 데도 주 원인이 있다. 현재

민간 상담기관으로는 한국 성폭력상담소, 가정법률상담소, 민우회, 여성의 전화, 사랑의 전화, 자비의 전화등 많은 상담기관이 있다.

〈주요 법률및여성상담기관현황〉

명 칭	주 요 업 무	조 직 현 황	대 표 전 화
가정법률상담소	법률, 가정문제	전국27개지부	(02)780-5688
한국여성의전화	가정상담, 성폭력	전국 8개지부	(02)269-2962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권익, 복지	전국 5개지부	(02)269-5763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 교육	서울, 부산 2개소	(02)529-4271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사구조, 기타상담	지부11, 출장소39	(02)571-7801

이런 민간상담기관의 증가는 바로 여성상담에 대한 수요(demand)를 감소하게 하여 경찰내부기관에서 여성상담실에 대한 관심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실제로 여성상담실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경찰서에 하루 1건 미만의 상담신청이 157개 여성상담실의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여성상담실은 경찰서 민원실의 민원업무와 병행하거나 수사과의 서무업무와 병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루에 1건도 채 되지 않는 여성상담을 위하여 상담의 전종요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경제적 비효율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여성상담실을 더욱 활성화하려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참고적으로 여성상담실의 운영실적은 다음과 같다.

〈여성상담실의 운영실적〉

연 도	접수건수	형사입건	민사관계	이 첩	기 타
1992	880	36	613	6	225
1993	11,600	2,088	5,603	186	3,723
1994	6,883	867	5,546	366	104
1995	6,284	952	3,548	60	1,724

위 통계에서 보듯이 여성상담실의 상담접수 건수가 계속 감소되고 있으나 94년에 비하여 95년의 형사입건수가 증가하고 민사관계는 감소한 것을 보면 상담내 용중 형사사건은 경찰서에 주로

상담을 하고, 민사사건은 민간상담기관에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여성상담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업화의 원리에 따라 민사관계에 대한 부정확한 상담을 하기 보다는 민사관계는 법률구조공단 등의 전문기관에 상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그 추진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수사교육을 수료하거나 수사경험이 있는 여자경찰관을 수사과 조사계 소속 수사요원으로 배치하고, 동 여경 수사요원이 상담여경을 겸무, 전화 상담, 내방상담등을 우선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상담여경은 수사과 소속발령을 원칙으로하여 수사활동비를 지급하고, 타사무실에 배치된 상담전용전화(해당국번+0118)는 상담여경이 직접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며, 여성 피해자 상담공간을 가능한 확보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여성상담실 상담전화 중 약 55%를 접하는 채권채무, 가사소송등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법률 및 여성 전문상담기관으로 정중히 연계시키고,

상담전화 중 약 55%를 접하는 채권채무, 가사소송등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법률 및 여성 전문상담기관으로 정중히 연계시키고, 반대로 여성상담기관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상담여경이 상담할수있도록 민간단체와 공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반대로 여성상담기관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상담여경이 상담할수있도록 민간단체와 공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여성상담실의 효과적 운영과 민간상담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는 성폭력범죄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 신고율을 제고 하는데 기여를 할 것이다.

2) 여자경찰의 수사기능 확대

수사과 및 형사과에 여성관련 범죄전담반을 편성하여 여자수사요원을 점진적으로 증가 배치하고 여성관련 범죄첩보수집, 성폭력여성피해자 수사, 여성피의자의 조사등에 적극 활동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최근들어 여성이 범인이 되는 여성피의자 범죄자수가 점증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여성이 피해자인 여성피해범죄가 증가하는 수요에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절한 공급(supply)측면에서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미국의 경우 여경이 살인, 마약수사는 물론 외근 순찰까지 남자와 동등하게 실시하고,일본은 신입여경 순환보직시 유치장 간수도 실시하며, 홍콩은 교통사고 조사,형사분야에서 남자와 동등함은 물론 1971년부터

군중정리 훈련까지 실시한다고 한다.(자료 - 외국경찰제도 연구 총서, 치안본부) 사실 여자경찰은 남성 경찰보다 고학력이고 여경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도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자경찰관의 학력현황 샘플조사〉

95. 2월 신임순경과정

구 분	대 줄	대학중퇴	고 줄	총 계(%)
남 자	102	108	178	388
여 자	85	23	17	125
합 계	187	131	195	513

그러나 여경이 수사분야에 증가 배치될 때 여성의 문제는 여성의 야간근무와 관련한 노동법조항과의 균형이다. 근로기준법 제51조는 '여자와 18세 미만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위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 56조에서 '여자와 18세 미만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시키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찰공무원과 무관한 것 같지만 이것은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에 저촉될 위험이 있다. 즉 경찰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여경을 일반 사업장의 여성보다 더 힘든 야간작업에 시킬 경우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물론 특별권력관계 이론을 원용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특별권력관계는 2차대전후부터 비판의 십자포화를 받기 시작한 이론이다. 현대의 행정법의 조류

는 특별권력관계 내에서도 기본권은 보장되고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여경을 수사기능에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여경의 특성상 야간근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렇게 할 경우 정원상으로는 여경이 남자경찰을 대체하여 남자경찰의 당직이 자주 돌아온다든가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여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점은 앞으로 더욱 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3) 여성피해자 수사절차 개선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쪽에서 보면 '인생'에 대한 범죄이고 특히 그 피해자가 어린이일 경우 '일생'에 걸쳐 커다란 상처를 남기는 치명적인 범죄이다. 이처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경찰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히 성폭력피해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폭력피해여성들이 피해를

입은 직후나 그 사건이 공개된 직후에는 피해 정도가 광범위하다. 때때로 감정적인 쇼크나 불신을 체험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에 대한 자기비난과 사건의 공개로 파생되는 부정적 대가에 대한 자기비난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증상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표현되는 감정’과 ‘통제된 감정’의 두가지 형태로 감정이 표출된다. 표현되는 감정적 반응은 분노인데 이 분노는 내면화 될 수도 있다. 또한 빈번한 자기 비난과 공포, 혼자 있기를 무서워하고, 밖에 나가는 것을 꺼리기도 한다. 특별히 강간한 자가 친구나 연인이었을 경우에는 심각한 비애나 슬픔을 체험하며 자신이 더럽다는 느낌이나 정결해 질 수 없다는 수치심으로 괴로워한다. 통제된 감정은 침착해 보이고 진정된 듯이 자신들의 감정에 가면을 씌울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내재된 감정을 피하려고 일거리를 만들어 바쁘게 움직인다. 신체적으로는 수면장애나 식용장애, 신체적 접촉의 어려움 그리고 신체적 통증등이 나타난다. 따라서 수사관들은 여성들의 이러한 섬세한 심리를 이해하여야 한다.

수사관은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시,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의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법적인 의무를 준수하고(성폭력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이를 위하여 가급적 별도의 피해자 조사공간을 확보하여

피해자 및 참고인, 신고자 조사시에도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피해자 신문조서 작성과 직접 관련없는 내용을 질문하여 수치심을 자극하는 것을 금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동반인(친구, 가족 등)을 배석시키는 절차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원하는 장소에 출장조사를 활성화하고 피해자의 주소·성명 등을 가명으로 사용하고 언론 등에 얼굴을 내밀어 이중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의 경우도 파출소나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올 경우, 경험척상 최후에는 화해하고 귀가하는 경우가 빈발한다 할지라도 재발방지를 위하여 가해자에게 엄중 사법조치의 경고 등의 적극적 대응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자 수사관의 교육 훈련시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의를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5. 글을 맺으면서

위에서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전반적인 시각에서 논의하고 특히 그런 과정에서 경찰의 역할을 모색하여 보았다. 사실 사회는 서로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주고 받는다. 성폭력과 가정폭력도 어느 특정분야의 사회구조에서 발생한 고유한 문제는 아닌것이다. 임시 위주의 교육, 음란한 성문화, 사법기관의 무

관심, 피해자의 도발, 재발방지를 위한 교정 교육의 불합리등이 한데 어우러져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그 해결방안도 종합적으로 접근이 되어야지 일부여성단체들처럼 법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기초가 부실한 접근에 의한 부실한 대응방안이라고 비판한다. 법은 사람을 더욱 잔인하게 만든다. 이것은 약이 병을 더욱 독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 따라서 형량을 높이고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고치려는 발상은 우려할만한 발상이라고 하지않을 수 없다. 우리는 너무나 특별법에 익숙해져있다. 김경록 사건 후 증인을 살해하였다고 법무부에서는 범죄신고자보호법 초안을 만들었는데 한국교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가졌다. 거기에서 논의된 대부분의 토론방향은 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법을 만들면 매년 법만능주의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다. 사실 형사정책학에서는 범인의 형량보다는 범인이 경찰기관이나 사회에 노출될 위험이 높을수록 범죄가 감소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대처함에 있어서 특별법위주의 입법을 해나가기 보다는 사회의 연대의식속에서 여론을 조성하고 그런 범죄자를 명단을 공표하는 방법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문헌〉

1. 사회학 개론 김경동 저
2. 사회심리학 정양은 저
3. 형사정책학 신진규 저
4. 헌 법 권영성 저
5. 행 정 법 홍정성 저
6. 형사소송법 이재상 저
7. 한국노동법 박상필 저
8. 범죄분석 경 찰 청
9. 카오스이론 제임스 글리크
10. 한국여경의 직무범위연구. 강일현